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53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최은석 · 조지연 · 김상훈
김태규 · 이소희 · 유상범
김선교 · 신성범 · 김성원
김장겸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u>2031년 12월 31일</u>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③ ----- ----- ----- <u>2031년 12월 31일</u> ----- ----- ----- -----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⑤ (생 략)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